

“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청약(한국부동산원 ‘청약Home’)을 원칙으로 합니다.”

▣ 특별공급 신청일정

신청 대상자	신청일시	신청방법	신청장소
일반(기관추천)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, 생애최초	2020.12.28(월) (인터넷 신청 '청약Home' : 08:00~17:30) (건본주택 : 10:00~14:00)	• 인터넷 청약 (PC 또는 스마트폰)	•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앱 :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"청약Home" • 건본주택 (※ 고령자, 장애인 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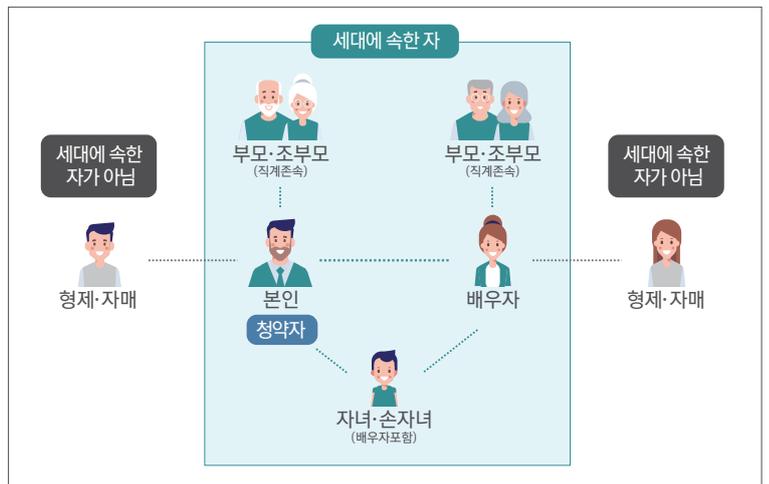
▣ 특별공급 공통사항

구분	일반(기관추천)	신혼부부	다자녀가구	생애최초	노부모부양
청약자격	무주택세대구성원(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)				
주택소유					
기본자격	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	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	미성년 자녀 3명 이상 (태아 및 입양 포함)	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(세대원 포함) ※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여부도 포함	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
청약자	무주택세대구성원			무주택세대주	
청약통장 종류	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(전용면적 85㎡ 이하)				
청약통장 요건	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※기관추천 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철거민 등 제외			청약통장 24개월 경과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	
청약가능 면적(전용)	85㎡ 이하		전평형	85㎡ 이하 전평형	
예비입주자	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%		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 청약 신청(특공+특공) 할 경우 모두 부적격 됩니다. (※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한정)</li> <li>•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. (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)</li> <li>•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(기관추천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)로 동일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li>• 예비입주자 선정 :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합니다.</li> <li>•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• 소형·저가주택 등 1호 이상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</li> <li>• 분양권 등도 주택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				

▣ 무주택세대구성원

- 무주택세대구성원
  - 무주택세대구성원 → 주택공급신청자, 신청자의 배우자,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·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등이 무주택 ※ 배우자의 직계비속(전혼자녀)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 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도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.
- 주택공급신청자
  - '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'무주택세대주', '무주택세대원'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'동거인,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'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▣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



# IPARK 가경 아이파크 5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안내

## ▣ 주택형별 공급세대

구분		국가유공자	장애인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중소기업 근로자	철거주택 소유자	합계
85㎡ 이하	84.8743(84A)	5	5	3	4	4	21
	84.7993(84A1)	5	5	4	5	4	23
	84.8833(84B)	6	5	4	5	4	24
	소계	16	15	11	14	12	68

## ▣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추천 또는 인정서류를 받은 분</li> <li>※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하여야 함 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)</li> </ul>																	
해당 기관 및 청약통장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추천대상자</th> <th>청약통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가유공자</td> <td>국가유공자 /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</td> <td>필요없음</td> </tr> <tr> <td>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</td> <td>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</td> <td rowspan="2">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 근로자</td> <td>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</td> </tr> <tr> <td>장애인</td> <td>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</td> <td>필요 없음</td> </tr> <tr> <td>철거주택 소유자</td> <td>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</td> <td>필요 없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추천대상자	청약통장	국가유공자	국가유공자 /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	필요없음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	중소기업 근로자	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	장애인	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	필요 없음	철거주택 소유자	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	필요 없음
구분	추천대상자	청약통장																
국가유공자	국가유공자 /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	필요없음																
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																
중소기업 근로자	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																	
장애인	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	필요 없음																
철거주택 소유자	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	필요 없음																
우선 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름</li> </ul>																	
당첨자 선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기관에 신청 → 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 결정(예비대상자 포함) 및 사업주체에 명단 통보 → 통보 대상자의 특별공급 청약 (예비대상자 포함)</li> <li>※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(동, 호 배정) 에서 제외됨</li> <li>※ 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함으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자정기관(한국부동산원) 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</li> <li>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</li> </ul>											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</li> <li>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

# IPARK 가경 아이파크 5단지 **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안내**

## ■ 주택형별 대상세대

구분		소득기준		합계
		우선공급(75%)	일반공급(25%)	
85㎡ 이하	84.8743(84A)	27	8	35
	84.7993(84A1)	30	9	39
	84.8833(84B)	31	10	41
	소계	88	27	115

## ■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 중 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포함)</li> <li>무주택세대구성원 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) 단, 2018/12/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(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)</li> <li>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%) 이하일 것</li> <li>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</li> </ol> </li> </ul>
우선 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선공급(75%) 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(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%) 이하</li> <li>일반공급(25%) 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% (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0%) 이하</li> </ul>
당첨자 선정 방법	<p>[소득 &gt; 순위 &gt; 거주지역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선공급 75% :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% (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%) 이하 일반공급 25% :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20% (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0%) 이하</li> <li>동일 요건(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)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순위 :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(임신 또는 입양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※ 「민법」,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(2020년 9월 29일 개정) ※ 재혼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</li> <li>제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※ 혼인기간 중 자녀가 없거나, 2018. 12. 11.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</li> </ol> </li> <li>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(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)</li> <li>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 포함)수가 많은 자</li> <li>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 포함)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</li> </ol> </li> </o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</li> <li>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</li> <li>임신 및 입양의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및 입주 시 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</li> </ul>

## ■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구분		월평균 소득기준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우선공급 (75%)	외별이	100% 이하	5,554,983원	6,226,342원	6,938,354원	7,594,083원	8,249,812원	8,905,541원
	맞별이	120% 이하	6,665,980원	7,471,610원	8,326,025원	9,112,900원	9,899,774원	10,686,649원
일반공급 (25%)	외별이	100% 초과 ~ 120% 이하	5,554,984원 ~ 6,665,980원	6,226,343원 ~ 7,471,610원	6,938,355원 ~ 8,326,025원	7,594,084원 ~ 9,112,900원	8,249,813원 ~ 9,899,774원	8,905,542원 ~ 10,686,649원
	맞별이	120% 초과 ~ 130% 이하	6,665,981원 ~ 7,221,478원	7,471,611원 ~ 8,094,245원	8,326,026원 ~ 9,019,860원	9,112,901원 ~ 9,872,308원	9,899,775원 ~ 10,724,756원	10,686,650원 ~ 11,577,203원

-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655,729) \* (N-8)} •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기준소득 :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시 일반공급 25%(상위소득)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30%이하))를 선택하여야 함
- 상위소득 :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-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# I PARK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안내

## □ 주택형별 대상세대

구분	세대수	합계	비고
85㎡ 이하	84.8743(84A)	12	
	84.7993(84A1)	13	
	84.8833(84B)	14	
소계	39	39	

## □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주 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 중 이고 생애최초(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</li> <li>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</li> <li>- 세대주일 것</li> <li>-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</li> </ul> </li> <li>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동일등분 등재)가 있는 자</li> <li>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[과거 1년 내에 소득세(「소득세법」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)를 납부한 자를 포함]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. 단,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</li> <li>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30% 이하인 자 &lt;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&gt;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</li> <li>※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/ul>
당첨자 선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(청주시)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</li> <li>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(특별공급 공통)</li> </ul>

## □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(※2020.2.20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)

※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(배우자 직계존속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, 태어난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)

공급유형	구분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생애최초 특별공급	130% 이하	7,221,478원	8,094,245원	9,019,860원	9,872,308원	10,724,756원	11,577,203원

-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655,729) \* (N-8)\*130%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-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

# IPARK 가경 아이파크 5단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안내

## □ 주택형별 대상세대

구분	세대수	합계	비고
85㎡ 이하	84.8743(84A)	26	
	84.7993(84A1)	29	
	84.8833(84B)	30	
85㎡ 초과	101	35	
	116	15	
소계	135	135	

## □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(태아, 입양아 포함)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태어나 입양 자녀를 포함하여 선정된 경우 입주 시까지 출산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입양 유지가 되어야 함</li> </ul> </li> <li>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</li> </ul>
우선 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(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)</li> </ul>
당첨자 선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쟁이 있을 경우 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, 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미달시는 청주시 1년 미만 총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</li> <li>경쟁이 있는 경우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의 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”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</li> <li>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, 동점자가 있을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</li> <li>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</li> </ul> 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</li> <li>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, 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.</li> <li>재혼인 경우 배우자의 미성년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</li> </ul>

## □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
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① 미성년 자녀수	40점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※ 태아, 입양자녀, 전혼자녀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② 영유아 자녀수	15점	영유아 3명 이상	1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※ 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
		영유아 2명	10	
		영유아 1명	5	
③ 세대 구성	5점	3세대 이상	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(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 -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 경과된 자
		한부모 가족	5	
④ 무주택 기간	20점	10년 이상	20	-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선정 - 신청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인정)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※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기간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	15점	10년 이상	15	- 신청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인정)이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기간 산정 ※ 시는 광역시, 특별시 기준 / 도는 도, 특별자치도 기준 ※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⑥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5점	10년 이상	5	- 신청자의 청약통장 최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.
계	100점			

①, ②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))

③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

③, ④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

④, ⑤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

⑥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
# I PARK 가경 아이파크 5단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안내

## ▣ 주택형별 대상세대

구분		세대수	합계	비고
85㎡ 이하	84.8743(84A)	5	5	
	84.7993(84A1)	5	5	
	84.8833(84B)	6	6	
85㎡ 초과	101	7	7	
	116	3	3	
소계		26	26	

## ▣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하고 있는 자</li> <li>무주택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</li> <li>청약통장에 가입 후 24개월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)</li> </ol> </li> </ul>
당첨자 선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(청주시)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</li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</li> <li>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별표1)'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</li> <li>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</li> <li>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</li> <li>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</li> <li>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</li> <li>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</li> <li>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</li> </ul>